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스마트상점으로 육성·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9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I 지원개요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청기간) ① (개별 소상공인) '22. 6. 9.(목) ~ 예산소진시
② (상점가 및 협·단체) '22. 6. 9.(목) ~ 7. 1.(금) 18시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	지원규모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일반형 900개 이상 선도형 100개 내외
상점가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일반형 3개 상점가 내외
협단체	업종별 협·단체의 중앙회, 지회 및 분과 중 신청 주체의 소속 회원사가 100개 이상인 단체	일반형 2개 협·단체 내외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구분	특징	지원금액
일반형	○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 을 도입하는 매장	최대 5백만원 (공급가액의 70%)
선도형	○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단,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 선도형으로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자동 지원되어 일반형 평가 대상에 포함	최대 15백만원 (공급가액의 70%)

(신청방법 및 문의처) ① (개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 ② (상점가) 광역자치 단체가 소진공으로 공문 제출하여 신청 ③ (협·단체) 소진공(디지털 전략실)에 전자우편 제출(smart@semas.or.kr, 원본 우편 송부)

구분	전화번호	누리집 및 주소
중소벤처기업부	044) 204-7876, 7872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363-7807~7804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6층, 디지털전략실

- 붙임 1. 개별 소상공인 모집 세부내용
2. 상점가 모집 세부내용
3. 협·단체 모집 세부내용

붙임1

개별 소상공인 모집 세부내용

1. 모집개요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미러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선정일 ~ '22. 12월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 제외 대상>

-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참고 2]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
- '22년 스마트상점 및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지원받을 예정인 상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 점포는 스마트오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구분	특징	지원금액	지원규모
일반형	○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 을 도입하는 매장	최대 5백만원 (공급가액의 70%)	900개 이상
선도형	○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단, 로봇기본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 선도형으로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자동 지원되어 일반형 평가 대상에 포함	최대 15백만원 (공급가액의 70%)	100개 내외

* 스마트상점가 및 협·단체 선정 규모, 회차별 소상공인 선정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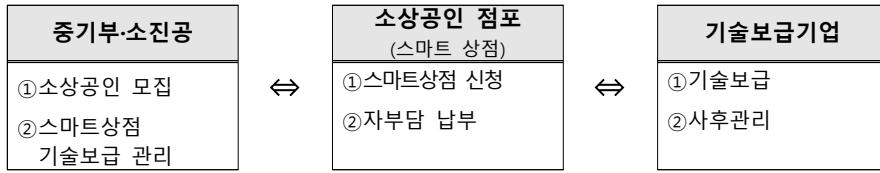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
 -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전체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
 -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은 소상공인마당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에서 확인가능
 -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 단, **스마트화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 지원가능 스마트 기술 종류 >

기술분류	기술분야	세부분류
중점지원기술	VR·AR	가상핑팅
		스마트글라스
		스마트미러
	3D	3D풋스캐너 / 3D프린터
	AI·IOT	사용자맞춤시스템 / 사용자분석시스템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안면인식시스템
출입인증시스템		
키오스크	키오스크	
기타	무인로봇 경영효율화서비스	
테이블 오더	테이블오더	
기초지원기술	스마트오더	스마트오더 QR 기반/ 앱·웹기반/태블릿 기반
	사이니지	DID
		LED 영상 전광판
		디지털메뉴보드
		웨이팅보드
		빔프로젝터
	기타	전자가격표시기
		LCD 전자철판
		스마트멀티터치테이블

* 기술별 상세내용은 "기술종류 설명자료" 파일 참고

스마트기술 보급 체계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2. 6. 9.(금) ~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
 - * 네이버에 "스마트상점"으로 검색하여 연동 가능
- (선 정 일)** 격주 단위 선정 (지원규모에 따라 소폭 변경 될 수 있음)
 - * 예산소진시까지 지속적으로 접수 받아 2주 단위로 평가 실시
 - 예) 6.9~6.23까지 신청건은 6.30일 평가 실시하여 발표, 6.24~7.7까지 신청건은 7.15일 평가 실시하여 발표
 -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 * 격주 평가를 통해 선정 결과 발표 시 탈락자는 재신청 가능

3. 평가방법

- (평가절차)** 서류평가 → 최종심의 순으로 평가하여 스마트 상점 선정
 - * 필요 시 현장평가가 진행 될 수도 있음
-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의지 등
 - * 신청서식 및 신청서에 작성해야하는 내용이 누락된 경우 평가불가로 인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최저점을 받게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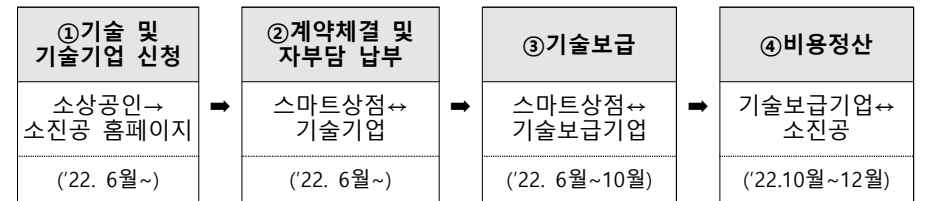
< 서류평가 항목 >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점수
의지 및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의 문제의식 및 점포 개선 의지 ○ 점포의 장점 및 경쟁력 정도 ○ 스마트상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 	20
스마트기술 도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희망 스마트기술에 대한 이해도 ○ 스마트기술 도입이 필요한 이유의 적정성 ○ 소상공인 업종/경영환경(매장크기, 위치 등)과 신청 기술과의 적합성 	35
스마트기술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기술 활용계획 수립 여부(추가적인 마케팅 등의 실행 계획 등) ○ 스마트기술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목표하는 성과 달성 가능성 ○ 스마트기술을 통한 점포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가능성 	35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후관리 수립 여부 ○ 자료 업데이트 비용, 유상유지보수 비용 부담 등 추후 소요 되는 비용 등에 대한 계획 	10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페이 가맹점 	2

- (최종심의)** 업종별 분포, 스마트 기술 분포 등을 고려하여 최종심의

4. 선정 후 절차

- 최종 선정되어 스마트기술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도입희망 스마트기술 선택 및 자부담 납부



- * 상기 일정은 승인요청 서류 제출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최종 선정 소상공인 대상 기술기업 선택 등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 설명회 개최 예정

5.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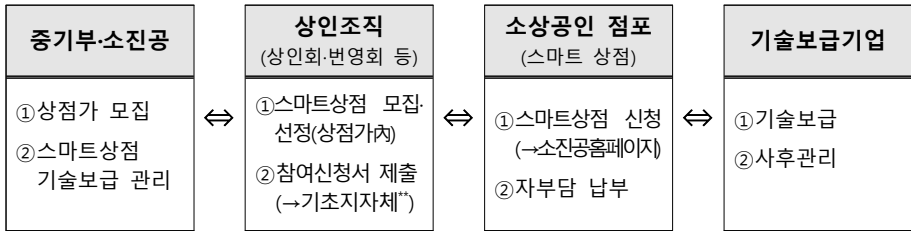
- 신청서, 기술서 등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국비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진공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연락불능 등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 선정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 적발***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음
 - *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페이백 지급, 끼워팔기 등

붙임2 상점가 모집 세부내용

1. 사업개요

- (내용)**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상점가로 지정, 상점가 내 상점에 스마트기술을 집중 도입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
- 상점가 역할**
 - **(신청단계)** 상점가 내 소상공인 대상 사업 안내, 참여 희망 소상공인 모집
 - **(보급단계)** 스마트기술 도입 진행상황 점검, 불공정거래 관리, 기술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상점가 3곳 내외
 - * 세부 규모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지원내용)** 스마트 상점가 內 스마트상점(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국비 70%, 공급가액 기준)

스마트기술 보급 체계



※ ①상인조직이 기초지자체에 제출, ②기초지자체는 광역단체에 참여 신청 공문 발송 ③광역단체는 기초단체들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소진공에 공문 발송

2. 모집개요

- (신청대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일정 규모 이상(예시. 80개 이상) 상점가를 우선 선정하고, 상점가별 가장 인접한 점포가 도보로 5분 이내 이동 가능한 경우 여러 상점가가 연합하여 신청 가능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권 내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단, 지자체가 역할 대행 가능)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상점가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 제외 대상>

-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 점포는 스마트오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개별점포 스마트 기술 도입 공급가액*의 70% 지원

* 공급가액 기준 70% 지원, 전체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

구분	특징	지원금액
일반형	○ 상점가에 소속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 을 도입하는 매장	최대 5백만원 (공급가액의 70%)

-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자유롭게 선택

*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은 소상공인마당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에서 확인가능

- 단, **스마트화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 지원가능 스마트 기술 종류 >

기술분류	기술분야	세부분류
중점지원기술	VR·AR	가상핑팅
		스마트글라스
		스마트미러
	3D	3D프린터 / 3D프린터
	AI·IOT	사용자맞춤시스템
		사용자분석시스템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안면인식시스템		
키오스크	출입인증시스템	
키오스크	키오스크	
기타	무인로봇	
테이블 오더	경영효율화서비스	
기초지원기술	테이블 오더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스마트오더 QR 기반/ 앱·웹기반/태블릿 기반
	사이니지	DID
		LED 영상 전광판
		디지털메뉴보드
		웨이팅보드
	기타	빔프로젝터
		전자가격표시기
		LCD 전자철판
		스마트멀티터치테이블

* 기술별 상세내용은 "기술종류 설명자료" 파일 참고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하여 도입

- (신청기간)** '22. 6월 9일 ~ 7월 1일 18시

- (신청방법)** 광역자치단체가 소진공으로 공문 제출하여 신청

* 상점가①→기초단체②→광역단체③→소진공의 순서로 제출

② 기준으로 7.1.(금) 까지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광역단체 도착) 접수된 것으로 인정

- (선정규모)** 스마트 상점가 3곳 내외

* 상점가별 지원희망 소상공인 규모에 따라 선정 상점가 규모 조정

- (선정일)** '22. 8월 중(예정)

- (사업기간)** 사업선정일 ~ '22. 12월

□ (신청서류) 첨부파일 「3. 상점가 신청서식」 사용

구분	참여주체	제출서류	
1	상가 대표조직 (상인회·변영회)	필수	【양식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상점가) 【양식3】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계획서(상점가) 【양식4】 ○○○상점가 스마트상점 신청자 명단 【양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3	기초지자체* (시·군·구)	필수 선택	【양식6】 스마트 상점가 사후관리 협약서 【양식7】 지방비 투자 협약서
4	광역지자체 (광역시·도)	필수 선택	【양식1】 스마트 상점가 총괄신청서 【양식7】 지방비 투자 협약서

□ 참여 주체별 역할

주체	역할
상인회, 변영회 등	스마트 상점가 모집 신청, 상가 내 스마트상점 모집·선정,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확인 및 현장관리, 도입 이후 사후관리 등 * 조직화된 사업주체가 없는 경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본 사업 신청 전 상인회 또는 변영회 등 조직 구성 필요 선정 시 컨설팅 수행(공단에서 컨설턴트 파견, 기술기업의 설명회 개최 주관, 상점가 내 전 상점 대상 참여 안내)
스마트상점	도입기술 선택, 자부담 납부, 스마트기술 도입 후 기기 관리 등 * 도입기술 및 기술보유기업은 소진공에서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풀(Pool)에서 선택
기초지자체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자부담 지원, 상점가 현황 및 성과, 사후관리 등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신청서 접수하여 소진공에 제출, 자부담 지원 등
기술보급기업	스마트기술 보급, 사업승인 요청, 결과보고서 제출 등

3. 평가방법

- (평가절차)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심의 순으로 3단계 평가를 통해 스마트 상점가 선정
* 서류평가 평점 60점 미만인 상점가는 현장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의지 등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서류평가	도입필요성	신청사유 적절성 및 상권 도입필요성 등	30점		
	상권분석	상권규모, 상권 활성화 정도 및 인근 상권의 연계가능성	20점		
	사업계획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스마트기술 이해도, 상점가 활성화 계획 등	30점		
	자부담 확보	자부담 확보방안 - 지자체 또는 상점가의 예산지원 확보 및 확정 여부 - 소상공인들의 자부담 확보에 대한 구체성	10점		
	사후관리방안	사후관리 방안의 적절성	10점		
	총 점			100점	
현장평가	사업추진 적합성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스마트 상점가 운영 시 기대효과 등	50점		
	추진기반 조성	스마트기술(오더) 도입 관심도 및 실행 가능성 등	40점		
	추진역량	지원사업에 대한 담당자 이해도 및 상가대표 조직과 지자체와의 유기성 등	10점		
	총 점			100점	
가점(최대 3점)	도입기술의 다양화 (1~3점)	상점가에 도입하는 스마트기술 종류	4개 이상인 상점가 3개 이상인 상점가 2개 이상인 상점가	3점 2점 1점	
		총 점			3점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안)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심의) 서류평가(40%), 현장평가(60%), 가점(최대 3점) 합산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적합성,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

4. 유의 사항

- 신청서, 기술서 등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국비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진공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점포 미확인(연락 불능 등) 및 현장 평가절차에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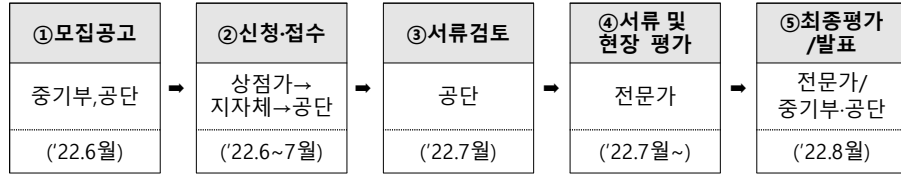
□ 최종 선정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 적발*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음

*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 페이백 지급, 끼워팔기 등

5. 향후계획

□ 상점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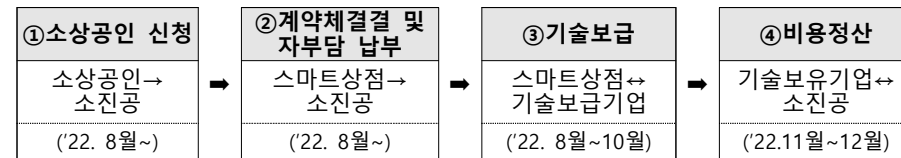


* 상기 일정은 신청 및 접수 현황, 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발표) 소진공 누리집을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 선정된 상점가에 소속되어 스마트기술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도입희망 스마트기술 선택 및 자부담 납부



* 상기 일정은 승인요청 서류 제출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3

업종별 협단체 모집 세부내용

1. 사업개요

□ (내용)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를 선정, 소속 회원사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업종별 스마트기술 모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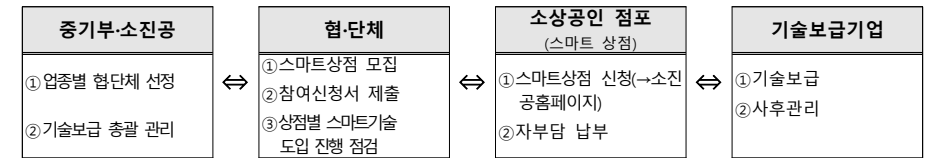
□ 협·단체 역할

- (신청단계) 회원사 대상 사업 안내, 참여 희망 회원사 모집
- (보급단계) 스마트기술 도입 진행상황 점검, 불공정거래 관리

□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주요 업종별 협·단체 2곳 내외
 - * 세부 규모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지원내용) 업종별 협·단체 회원사 중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지원(국비 70%, 공급가액 기준)

□ 스마트기술 보급 체계



2. 모집개요

□ (신청대상) 업종별 협·단체의 중앙회, 지회 및 분과 중 신청주체의 소속 회원사가 100개 이상인 단체

- (중앙회 신청) ①중앙회가 전국 회원사를 모집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중앙회가 일부 지회(분과)만을 모집하여 신청하는 경우
 - * ① (예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신청 → 지회(분과)는 신청 불가
 - ② (예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춘천지역 회원만을 대상으로 신청 → 춘천지회는 신청 불가
- (지회·분과 신청) ①중앙회가 신청하지 않고 각 지회(분과)가 개별 신청하는 경우, ②중앙회가 일부 지회(분과)만을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나 신청 지회(분과)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 * ① (예시)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지회, 대전지회 등 각 지회(분과) 개별 신청
 - ② (예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춘천지역 회원만을 대상으로 신청 → 춘천지회를 제외하타 지역 지회는 신청 가능

(지원대상) 선정된 협·단체 회원사 중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 점포는 스마트오더 지원 불가

(지원내용) 개별점포 스마트 기술 도입 공급가액*의 70% 지원
 * 공급가액 기준 70% 지원, 전체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

구분	특징	지원금액
일반형	○ 협·단체에 소속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 을 도입하는 매장	최대 5백만원 (공급가액의 70%)

-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자유롭게 선택
 - *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은 소상공인마당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에서 확인가능

- 단, **스마트화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 지원가능 스마트 기술 종류 >

기술분류	기술분야	세부분류	
중점지원기술	VR·AR	가상빔팅	
		스마트글라스 스마트미러	
	3D	3D풋스캐너/ 3D프린터	
	AI·IOT	사용자맞춤시스템 / 사용자분석시스템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안면인식시스템 출입인증시스템	
		키오스크	키오스크
		기타	무인로봇 경영효율화서비스
	테이블 오더	테이블오더	
기초지원기술	스마트오더	스마트오더 QR 기반/ 앱·웹기반/태블릿 기반 DID	
		사이니지	LED 영상 전광판 디지털메뉴보드 웨이팅보드 빔프로젝터
	기타	전자가격표시기 LCD 전자철판 스마트멀티터치테이블	

* 기술별 상세내용은 "기술종류 설명자료" 파일 참고

(신청기간) '22. 6월 9일 ~ 7월 1일 18시까지

* 신청마감은 전자우편 도착기준이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 불가

(신청방법) 소진공(디지털전략실)에 전자우편 제출(원본 우편 송부)

○ **(전자우편 주소)** smart@semas.or.kr

* 전자우편 발송 시 메일제목 : 스마트상점 협단체(단체명) 신청서 제출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

○ **(신청경로)** 업종별 협·단체 → 소진공(디지털전략실)

(선정규모) 협·단체 2곳 내외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선 정 일) '22. 8월 중(예정)

(사업기간) 사업선정일 ~ '22. 12월

(신청서류) 첨부파일 「4. 업종별 협단체 신청서식」 사용

제출자	제출서류	
업종별 협·단체	필수	【양식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협단체) 【양식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계획서(협단체) 【양식3】 ○○○협회 스마트상점 신청자 명단 【양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양식5】 사업참여 협약서
	선택	【양식6】 자부담비 지원 협약서

참여 주체별 역할

- (업종별 협·단체) 협·단체 內 스마트상점 모집·선정, 사업신청,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확인 및 현장관리

< 업종별 협단체 상세 역할 >

❖ 신청단계 ❖

1.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인 협·단체 회원사 대상으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안내
2. (스마트상점 모집·선정)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점포를 모집·선정
3. (사업신청) 신청서·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소진공(디지털전략실)에 제출

❖ 선정이후 ❖

1. (현장관리) 스마트기술 도입 및 최종 설치 확인, 사후관리
2. (모델개발) 업종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자문회의 등에 참석 및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점포 지원안내
3. (불공정거래 관리)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및 부당거래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시행
4. (설명회 개최) 기술기업 대상으로 회원사가 참석하는 기술설명회 개최

- (스마트상점) 도입기술 선택 및 자부담 납부, 기술도입 후 기기 관리 등
- (기술보급기업) 스마트기술 보급, 사업승인 요청, 결과보고서 제출 등

3. 평가방법

(평가단계) ①발표평가* → ②최종심의 평가**를 통해 업종별 협·단체 선정

* 업종별 협단체의 회장·담당자 등 관계자 발표를 통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방법,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발표평가 미 참석시 서면평가 실시)

** 발표평가 평점 60점 이상인 협·단체에 대해서만 최종심의 진행

(평가기준) 사업 적합성, 추진역량,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술보급 계획 등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발표 평가	사업추진 적합성 (50점)	신청사유의 적절성(해당 업종에 대한 도입 필요성 등)	10점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등(매출액 상승, 근무시간 감소 등)	10점
		사업계획의 현실성(보급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등)	20점
		불공정거래 관리 방안의 구체성	10점
	추진역량 (30점)	스마트상점 참여 정도	10점
		스마트상점 선정 계획 등	10점
		지원 사업 관리를 위한 협단체 내 인력배정	10점
	업종별 특성 반영 (20점)	업종별 필요 스마트기술 도입 방안의 구체성	10점
		업종별 스마트상점 육성을 위한 자체 계획	10점
	총 점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안)은 변경될 수 있음

(최종심의) 발표평가 점수(100점)를 바탕으로 운영 적합성, 기술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

4. 유의사항

신청서, 기술서 등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국비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진공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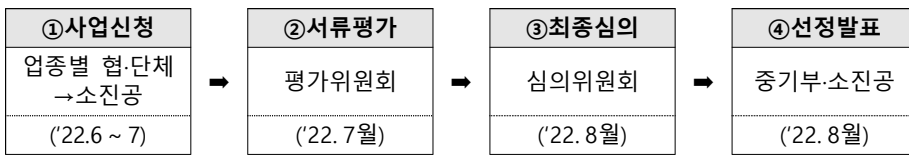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 적발*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음

*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페이백 지급, 끼워팔기 등

- 최종 선정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향후계획

- 협·단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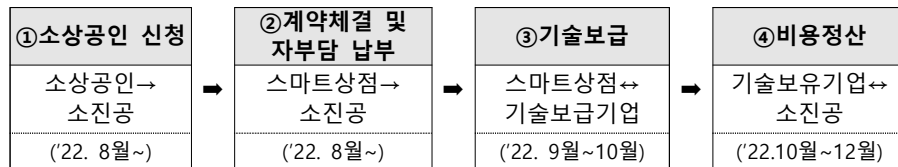


* 상기 일정은 신청 및 접수 현황, 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발표) 소진공 누리집을 통해 최종 선정 협·단체 공지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 선정된 협·단체에 소속되어 스마트기술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도입 희망 스마트기술 선택 및 자부담 납부



* 상기 일정은 승인요청 서류 제출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